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18
------------	-----

제출년월 : 2023년 11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구성·운영(안 제4조~제5조)
- 나. 임원의 해임 요구 등(안 제6조)
- 다.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10조)
- 마. 경영실적 평가(안 제11조)
- 바. 경영진단 실시(안 제12조)
- 사.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위탁(안 제13조~제14조)
- 아. 평가의 활용 및 시정명령(안 제15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8조, 제2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09. 27. ~ 10. 17. (20일)
- 예고결과: 성북문화재단 제출의견 2건 반영 (임원에 대한 정의 추가 요청 등)

2) 비용추계 등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나)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 마) 아동영향평가 결과: 평가대상 아님

4) 법제심사: 검토의견 7건 반영(인용조문 추가, 문구정리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기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거나 성과계약서·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구성) ① 구는 법 제6

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8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부구청장을 포함한다)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안전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여러 부서가 연계된 경우 출자·출연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10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전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9조제1호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서울특별시·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경영실적 평가)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제9조제2호의 경영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임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 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경영진단 실시)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의결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경영진단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제10조제4항의 성과계약 달성 정도, 제11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제12조의 경영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경영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제12조의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
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를 평가대상기관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
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 체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 성 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김 중 호